중앙일보

성매매·성추행에 女화장실 몰카···죄다 경남 경찰들이 한 짓

기사입력 2020-01-07 11:25 최종수정 2020-01-07 12:38

지난달 말 통영경찰서 한 순경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 적발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, 근무시간에 여관에서 적발되기도



성범죄 관련 그래픽. [연합뉴스]

경남 통영에서 한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 붙잡혔다. 경남에서는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성 관련 비위가 계속 적발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.

통영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로 통영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. A 순경은 지난해 말 통영 시내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.

2020. 1. 7. 인쇄 : 네이버 뉴스

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황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보고 따라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. 이어 화장실 옆 칸에서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다 들켰다. A 순경을 여성이 놀라 소리를 치자 달아났다.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TV(CCTV) 등을 통해 A순경을 검거해 보니 경찰관으로 드러났다. A 순경은 범죄 혐의를 시인해 불구속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. 경찰은 조만간 A순경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.

경남에서 경찰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지난해에는 경남의 한 경찰 간부가 불법 퇴폐 업소를 이용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건도 있었다.

지난해 11월 4일 부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남경찰청 B 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.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B 경정은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키스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같은 달에는 경남경찰청 소속 C총경이 여경과의 노래방 2차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기도 했다. 특히 이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여경은 만삭의 몸이었는데도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.

경남경찰청에 따르면 C총경은 지난 10월 14일 오후 2차 노래방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대기 발령됐다.



경남경찰청. [사진 경남도]

경찰 조사 결과 이날 C총경은 외부인이 참가하는 회의를 한 뒤 외부인 1명과 C총경·경감 등 남성 4명과 여경 2명이 함께 노래방으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. 이 자리에서 C총경이 한 여경에게 과도하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이 진술 내용이다. 또 다른 여경은 만삭의 몸인데도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. 만삭의 여경에게 무리하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한 사람이 C 총경인지 아니면 다른 동석한 남성 중 한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.

야간 근무시간에 외국인 여성과 모텔에 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. 지난해 7월 26일 오전 3시쯤

2020. 1. 7. 인쇄 : 네이버 뉴스

경남 진주시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.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모 텔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외국인 여성과 함께 현직 경찰 D씨가 있었다. D씨는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당시 진주경찰서 내 별관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무단으로 이탈해 여관에 있었다. 당시 D씨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했다. D씨는 적발 당시 경찰에서 "외국인 여성과 연인 사이 다"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통영=위성욱 기자 we@joongang.co.kr

- ▶ 노후경유차 과태료 35만원 피하려면? 먼지알지!
- ▶ 중앙일보 '홈페이지' / '페이스북' 친구추가

ⓒ중앙일보(https://joongang.co.kr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이 기사 주소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5&aid=0002965920